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3-57호**  
**2023. 9. 27.(수)**

## 차 례

###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규칙 제53호) ..... 1

### 훈 령(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훈령 제489호) .....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90호) .....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91호) ..... 61

### 고 시(2)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고시 제2023-97호) ..... 63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고시 제2023-98호) ..... 64

### 공 고(1)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3-1034호) ..... 65

## 차 례

###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026호) ·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027호) · 80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035호) ..... 9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037호) ..... 106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조제3항 중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사람으로”를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4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여 산입하되,”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표 21, 별표 22”를 “별표 21”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4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 별표 22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용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 이 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플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입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입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입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입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입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입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 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 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 비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 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 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 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 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 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 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 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지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위생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6)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3),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사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직렬	계급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법의학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의사(12) 치과의료정보관리 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법의학사(8) 물리치료사(8) 치과의사(8) 치과의료정보관리 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법의학사(5) 물리치료사(5) 치과의사(5) 치과의료정보관리 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법의학사(2) 물리치료사(2) 치과의사(2) 치과의료정보관리 사(2) 안경사(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정보관리사 법의학사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치과의료정보관리 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위생사(12) 환경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환경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5) 환경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우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기사(10) 항공기기사(10) 항공교통관계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기사(6) 항공기기사(6) 항공교통관계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기사(3) 항공교통관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기사 항공교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우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기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기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기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기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 2급(6)	한글숙기 1 2 3급(2)	한글숙기 1 2 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기계	기 능 장 :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송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송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볼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원자력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일반화공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일반화공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자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입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입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나무의 사
농업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나무의 사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입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입산가공 기능사: 산림, 입산가공,	
농업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자격증 가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장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은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정, 지적	
	도시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곤충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p>기 사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경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농업연구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p>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수산공학	<p>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p>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p>	
보건연구	의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 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토 목	기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기 사 : 방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시표 (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해야 함]
○○○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관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추가 및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며, 수수료 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함(제6조).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도록 정비함(제11조).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제15조의2).
- 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범위를 정비함(제24조).
- 마. 인사평정 가산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을 신설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폐지함(제27조 및 별표 22).
- 바.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여건에 맞게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별표 5 및 별표 6).
- 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녹지직렬 중 나무의사를 추가함(별표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8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

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총무과와 환경과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 감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업무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을 말한다.

8. “채용담당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총무과를, 환경관리요원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부서를 말한다.

9.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

10. “감사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을 말한다.

11.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2.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3. “대체인력”이란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원근로자 중 환경관리요원과 청원경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관리요원 복무 규정」과 「청원경찰법」 등의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2장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

우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담당부서 채용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부서에서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되, 이 중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공무원근로자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에서는

정원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채용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서는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인원·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연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본예산 편성전에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③ 채용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채용담당부서는 수립한 채용계획에 따른 사항을 이행한 후 채용 결과를 공무원근로자는 정원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7.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가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선발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서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① 채용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지원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 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채

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할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기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의 부정 합격한 사람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한 사람으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2조와 관련)**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28조와 관련)**

-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 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별지 제1호서식]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 ]공무직 [ ]기간제	전형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대덕구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 위            성 명    (서명)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 위                            성 명                            (서명)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원자

(서명)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중 채용 관련 조항을 통합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채용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 라.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마. 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바.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사. 대체인력뱅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및 제15조).
- 아. 심사위원 선정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 자.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
- 카.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구비서류, 채용서류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9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채용, 복무”를 “복무”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채용 및 보직변경 등”을 “근로계약 체결 및 보직변경 등”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중 채용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채용에 관한 용어를 삭제함(제1조 및 제2장제1절의 제목).
- 나. 채용, 채용공고,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9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채용절차, 자격기준”을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중 채용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채용절차 용어를 삭제함(제1조).
- 나. 채용절차와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규정을 삭제함(제9조 및 제10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승인번호	점용위치	면적 (㎡)	목적	기간	수허가자	
					성명	주소
2023-01	삼정동 528-1	24	진출입	2023.01.01.~ 2027.12.31.	송원석	대전 유성구 배울1로 119
2023-02	대화동 568-33	242	진출입, 공작물 설치 및 적재	2022.01.01.~ 2026.12.31.	애경산업㈜ 대전공장	대전 대덕구 대화로 32번길 174
2023-03	대화동 583-1	210	진출입을 위한 인공구조물	2023.01.01.~ 2027.12.31.	금보산업	대전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2023-04	읍내동 543-59	18	컨테이너 설치	2023.09.23.~ 2028.12.31.	대덕구청장 (환경과장)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2023-05	장동 831-43 외 1	273	수로복개, 웬스설치	2023.09.07.~ 2037.12.31.	대덕구청장 (에너지산업과장)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끝.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승인일자	위치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내용	신청인	주소
2023.1.4.	오정동 705-76	2023.1.6.	2023.1.31.	전주신설 (1기)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	대전 유성구 계룡로 114
2023.9.12.	장동 831-43 외 1필지	2023.9.12.	2023.11.1.	수로복개, 웬스설치	대덕구청장 (에너지산업과장)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끝.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44-8, 244-9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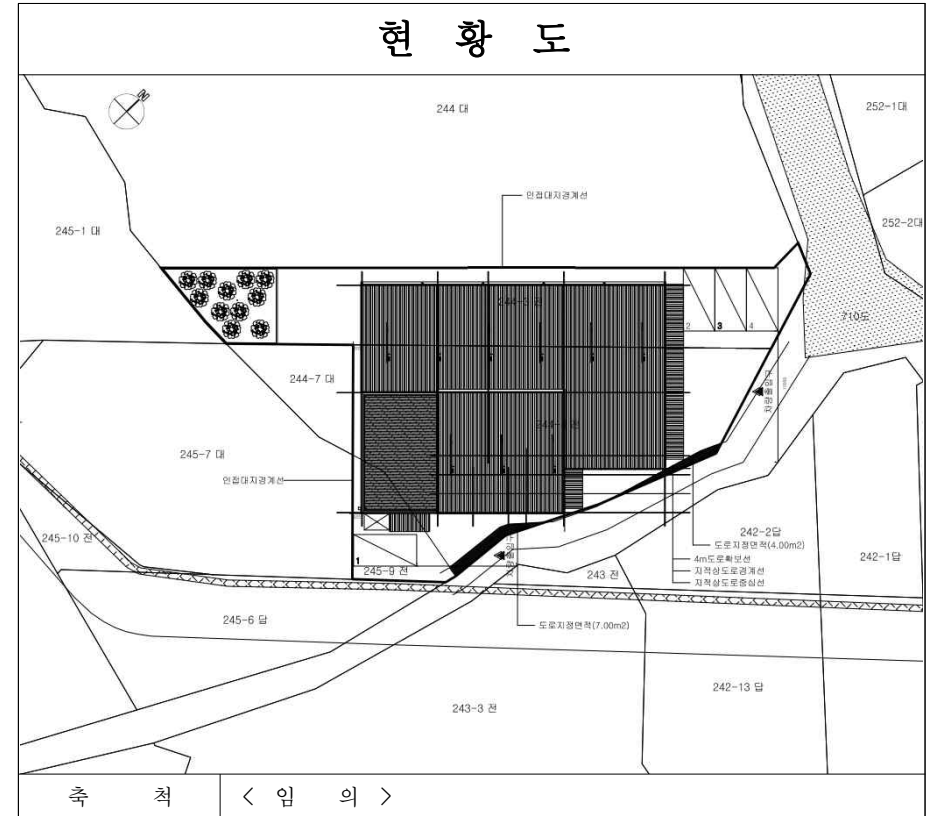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하는 사항

위 치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신탄진동 244-8번지	4㎡	4㎡	(주)한돈	동의	-
신탄진동 244-9번지	7㎡	7㎡	(주)한돈	동의	-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글자)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5, FAX : 042-608-3811, E-mail : rudals4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경민(전화 : 042-608-6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대덕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국장급 공무원

3.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4. 감사부서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02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지원의 취소, 변호인 보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5, FAX : 042-608-3811, E-mail : rudals4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이경민(전화 : 042-608-6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

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

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담당업무	_____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_____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div style="text-align: center;">징계의결 요구</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요구일</span> <span>관할 징계위원회</span> </div>	
징계의결요구개요	_____	
징계의결요구사유	_____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덕구청장 귀하</p>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읍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

내 용	의 건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대덕구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일괄정비함.
  - 나. 다자녀가정 자녀의 나이 기준을 18세 이하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정비함.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061, FAX: 042-608-3811, E-mail: lmseon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 자녀가 세 명”을 “이하의 자녀가 2명”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셋 이상의 자녀를”을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마목 중 “자녀 셋”을 “18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미성년의 세 자녀”를 “18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세 자녀”를 “18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미성년의 세 자녀”를 “18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u>미성년의 세 자녀</u> 이상을 둔 부모	3. <u>18세 이하의 자녀 2명</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미성년의 세 자녀</u>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5. <u>18세 이하의 자녀 2명</u>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세 자녀</u> 이상 다자녀, 다문화 가정 세대	3. <u>18세 이하의 자녀 2명</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상·하반기별 두 과목으로 한정한다.	제22조(수강료 감면) ----- -----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다문화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03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2023. 5. 11.)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주민의 대표단체로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9조, 제22조).
  -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6조).
  - 다. 위원의 자격으로 제한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 라.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 마.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자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8조, 제18조).
  - 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함(안 제10조).

사.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함(안 제32조).

차.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 33조의2, 제34조, 제36조).

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2).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자치행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전화 : 042-608-6515, FAX : 042-608-3822, E-mail : yongs1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 담당자 권태용(전화 : 042-608-65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6조 중 “30명 이상 50명”을 “20명 이상 40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 모집한 날”을 “공개 또는 추천으로 모집하는 공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로,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를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회는 제1항”을 “선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선정위원회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를 “경우 공개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위원은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공개추첨위원: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추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장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

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위원과 예비후보자 수 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과 배분 방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천위원 비율 등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다)을 1명 부회장을 2명 이내로”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로, “호선한다”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개최하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련한”을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수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제19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의 후단 중 “추첨방법”을 “제8조의 방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선임된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실비 및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8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 100% 수강료 : 10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사용료 : 100% 수강료 : 50%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 수강료 감면은 동일 기간 내 운영강좌 중 2과목으로 한정



<신 설>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2. 추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  
-----  
-----  
-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  
-----  
-----  
-----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경우 공개추첨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위원은 제2호의 방법으로 ---.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생 략)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생 략)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신 설>

-----  
-----

1. (현행과 같음)  
2. -----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⑩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1. 주민자치회장
-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3.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위원과 예비후보자 수 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과 배분 방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천위원 비율 등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1명 부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한다) 1명과 부

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③·④(생략)

<신설>

<신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

회장 2명을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②·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삭제>

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제13조(주민총회) ① ----- 개최할 수 있으며-----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  
-----  
-----  
----- 수립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

<신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  
-----  
-----  
-----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  
-----

1.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수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정치적 중립) -----  
----- 특별법 제40조제5항-----  
-----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u>추첨방법</u> 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 ----- -----. ----- <u>제8조의 방법</u>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개월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u>선정된</u> -----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3. ----- <u>특별법</u>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0조제5항----- -----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u>특별법 제40조제5항</u>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p>정되는 경우</p> <p>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p>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⑦ (생략)</p> <p>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⑦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신설&gt;</p>	<p>제33조의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34조(감독)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들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제34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주민자치회는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p>
<p>제36조(운영세칙)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6조(운영세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